

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
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
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
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받
급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성조사”를 “안전성조사”로 하고,
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
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·도지
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농수산물의 생산자
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
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의3서
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각
각 “별지 제1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1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
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본문
중 “안전성검사기관”을 “잔류조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
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
기관(이하 ‘잔류조사기관’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을 포함한다)
2. 시·도(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
을 포함한다) 및 시·군·구
3.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4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식
품 등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5.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9조제5항 관련)”을 “(제9조제6항 관련)”으로 한다.
별표 1 나목의 수거량란 중 “식품공전(食品公典) 제9 검체의 수거 및 취

급방법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중 “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”을 “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96호)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「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41호)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

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농산물 등 시료수거 내역서

시 료 정 보 (공 통)	시 료	[]농산물 []농지 []용수 []자재 []기타()		내수 []내수 /수출 []수출(국가명 :)	조 사 구 분	자제 (상사, 기획 등)		
	유해물질	[]잔류농약 []중금속 []항생물질 []잔류성유기오염물질						
		[]병원성미생물 []곰팡이독소 []방사능(조사, 핵종) []기타()						
	품 목		수거량	(kg)	수거일	년	월	일
	수거지	(유통·판매단계는 유통·판매업소명을 포함)						
수 거 정 보 (농산물)	수거단계	[]생산 []유통·판매	조사면적 /물량	(m ²) (kg)	출하예정일 (조사일)	년	월	일
	재배지	(생산지, 역추적 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)						
재 배 정 보 (농산물)	재배양식	[]일반 []친환경 []GAP []기 타	조사 종류	[]사전예방조사 []정책지원조사()	[]잔류실태조사 []기타()			
	지역/시설	/		인증번호				
인 적 사 항	구 분	성 명		전화번호	주소(집, 사무실) (상호명)			
	☐ 생산자 ☐ 소유자							
기 타	[]농약사용 안함 []농약사용 실태조사 생략 []농약사용 실태조사 ※ 농약사용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결과(농약명, 횟수/농도, 최종살포일 등) 및 현장지도 내역을 기입				분석결과 통보여부			
					[]통보희망 / []통보생략			

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시료를 위와 같이
[]무상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[]유상 수거하였음을 확인하며, 아래와 같이 시료대금을 청구합니다.

계좌번호 (은행명)		예금주 (주민등록번호)		금 액	
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	--	-----	--
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·이용 목적	수집·이용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대금 지급	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	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에 동의합니다.

※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시료대금 지급이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[]동의 / []거부

3.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유통 및 판매업체에게 시료수거 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[]동의 / []거부

4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2조 및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. 시료수거 / 2. 정보제공 / 3. 영수(청구)에 대해 확인/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확 인 자 : 소속/직책	주소(상호)	성명	20	년	월	일	시
조사공무원 : 소속	직급	성명					
조사공무원 : 소속	직급	성명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㎡]

수산물 등 시료수거 내역서

수 거 정 보	업체명	소재지
	대표자	연락처
시 료 정 보 (공 통)	수거품명	수거량
	수거사유	[]안전성조사 / []기타특별조사 / []모니터링 / []기타()
	수거단계	[]생산 / []저장 / []거래 전 단계 / []기타()
	유해물질	[]중금속 []항생물질 []금지물질 []유기물질
		[]독소 []방사능 []감염병 []기타물질
	수거일시	년 월 일 시 분
수조번호/입식량 (양식장일 경우)	선명/선장연락처 (위판장일 경우)	
결 과 통 보	[]통보생략 / []유선 / []우편 / []팩스 / []이메일 ()	

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시료를 위와 같이
[]무상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[]유상 수거하였음을 확인하며, 아래와 같이 시료대금을 청구합니다.

계좌번호 (은행명)		예금주 (주민등록번호)		금 액	
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	--	-----	--
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·이용 목적	수집·이용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대금 지급	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	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에 동의합니다.

※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시료대금 지급이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]동의 / []거부

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2조에 및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. 시료수거 / 2. 정보제공 / 3. 청구에 대해 확인/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확 인 자 : 소속/직책	연락처	성명	20	년	월	일	시
조사공무원 : 소속	직급	성명					
조사공무원 : 소속	직급	성명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안전성조사의 절차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안전성조사의 절차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
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⑤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----- 제4항----- ----- ----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0조(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) ① (생략)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·도지사는 <u>안전성조사</u>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·사용되는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	제10조(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안전성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 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 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-----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
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제11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<u>별지 제1호서식</u> 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의3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항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제출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 제15조(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(이하 ‘잔류조사기관’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 1. <u>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)</u> 2. <u>시·도(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다) 및 시·군·구</u> 3. <u>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</u> 4. <u>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</u>

	<u>에 따라 식품 등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</u>
② ~ ④ (생 략)	5. <u>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.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잔류조사기관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⑦ -----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.